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1589(2021.7.9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23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3321(2021.7.24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,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**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**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1. 7. 26.(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**제외), 경기도

** 강화군,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**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·시행

다. 적용단계: 거리두기 4단계

라.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3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**종교시설**

■ **고위험 사업장(2종)**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집합금지(유흥시설 등),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(유흥시설 외)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단체에서는 소속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방역지침(4단계 개선내용(7.20 시행) 포함)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동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기간(2012.7.26 ~ 8.8)에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, 성가대, 소모임 운영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.
2. 기본 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주무관

박승화

행정사무관

손문희

종무1담당관

전결 2021. 7. 25.

강성태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2664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15동 .

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28

팩스번호 044-203-3462

/ psw0113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